

종합토론

□ 토론참석자

토론좌장 : 진정란 연구위원 (소비자정책연구소)

토론위원 : 김미선 센터장 (성남시금융복지상담센터)

토론위원 : 최건호 부위원장 (서민금융진흥원)

□ 종합토론 주제

- 바람직한 금융복지상담센터의 설립 근거, 기능 및 역할

□ 세부 주제

1. 복지 관점에서의 금융상담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

- 채무자의 금융상담-복지연계

2. 금융복지상담센터의 한계와 발전 방안

- 법과 제도, 재정조달, 운영방식, 전달체계 중심으로

3. 서민금융진흥원의 한계와 발전 방안

- 법과 제도, 재정조달, 운영방식, 전달체계 중심으로

4.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의 공존과 협력 방안

복지 관점에서의 가계부채상담기구의 바람직한 기능과 역할

좌장: 진정란(소비자정책연구소 연구위원)

경제 위기로 인한 실업 증가와 상시적인 고용 지위 불안, 초고령 사회에서의 노인 인구 증가와 건강의 문제, 급속한 가족의 해체와 1인 가구의 증가, 사회 불평등 구조의 고착화로 인한 사회적 부의 지속적인 편중, 더 나은 사회적 지위로 획득할 수 있는 계층 이동 사다리의 부재 등 현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위험 요소는 팽배해지고 있다.

현대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고 있는 이러한 위험 요소들은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하기 힘들며, 도리어 개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구조적 문제이고, 구조 속에서 고착화되어 쉽게 해결 방안을 찾기도 힘들다. 한 가지, 혹은 여러 가지의 사회 위험에 노출되어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할 수 없는 생활 형편에 놓인 사람들 대부분은 사회 취약 계층이거나 사회적 경제적 지위 하락으로 사회취약계층이 된 사람들이다. 일부에서는 이들의 가계부채 문제를 개인의 도덕적 해이, 불성실한 생활 패턴, 소득과 자산에 맞지 않는 과소비(유흥/도박 등) 문제로 치부하면서 가계 부채에 함축돼있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위험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결국 가계부채 문제는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부동산 정책의 실패, 산업구조 재편에 따른 일자리 창출 정책 실패, 불안정한 노동시장과 임금소득의 실질적인 하락, 부의 재분배 기능을 하지 못하는 사회보험제도의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응축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정책의 실패, 정책의 부재를 민간의 부담으로 떠넘겨 시장에서 자생적으로 해결하도록 강제하고 있다. 이에 고소득자는 고소득자대로 부채를 통해 자산을 불리고, 저소득자, 금융소외계층들은 그들대로 열악한 조건에서 부채로 생계를 잇고 있는 상황이다. 전 국민이 노동, 의료, 교육, 생활의 문제를 빚으로 해결하고 있는 부채 주도의 경제는 지속가능하지 않으며,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복지의 공공성, 포괄성 확대를 통해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여,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상담제도는 현대 사회의 구조적 위험에 노출되어 더 이상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을 겪는 계층에게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지

원하고, 특히 가계부채라는 특수한 문제에 놓은 채무자를 대상으로 그에 적합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복지와 관련하여 ‘금융상담’의 법적 근거는 현행 ‘사회보장기본법’(1995년 제정, 2017년 개정)에서 찾아볼 수 있다. 동 법 제3조에 따르면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회서비스’를 규정하고 있다.

즉, 가계부채로 인해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계층에게 가계채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필요한 경우, 복지제도를 연계해주는 상담 서비스는 채무자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주어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의무라는 것이다.

그렇다면 채무자 대상 상담 서비스는 왜 정치적으로 제도화되어야 하고, 법적으로 보장받아야 하는가.

그 이유는 첫째, 가계부채 및 복지연계 상담은 채무자들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이기 때문이다. 도덕적으로 정당한 채무와 도덕적으로 정당하지 못한 채무라는 이분법적 논리는 자칫 채무자가 당연히 국가에게 요구해야 할 자신의 권리를 훼손시킬 수 있다. 중요한 것은 채무자도 국민으로서 정부에게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해줄 것”을 요구할 권리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채무자들의 이러한 권리를 제도화되고, 법적으로 보장할 때에만 사회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채무자 대상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자원들 - 재정 문제, 관련 기관 및 지방정부와의 협력 관계 등 - 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원들을 동원하려면 제도화가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책임의 분배를 명확하게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채무자 상담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 전달체계와 방법의 문제, 서비스 제공 주체의 문제 등이 제도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복지의 관점에서 채무자 대상 상담 서비스는 “민감성, 공감, 응답성, 책임성¹⁾”이라는 원칙

1) Held는 돌봄윤리의 가치로서 “민감성, 공감, 응답성, 책임성”을 제시하면서, 복지정책이 제도화되고 실천되는 단계에서는 복지 제도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제공되는 돌봄 서비스는 그들이 처한 상황에 대한 구체적이고, 맥락적인 차원에서의 접근이

에 충실해야 한다. 상담 서비스가 요구되는 채무자들의 상황은 제 각각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상담 서비스는 매우 구체적이고, 맥락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하는 ‘민감성’이라는 가치가 우선 되어야 한다. 그리고 채무자 상담 과정에서 그들이 겪는 고통에 대한 ‘공감’, 그들의 필요와 요구에 대한 즉각적이고, 정확한 ‘대응(응답)’, 이러한 과정이 성실하게 이행되고 신뢰도를 높일 수 있는 ‘책임성’이라는 가치가 실현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채무자 대상 금융복지상담제도는 무엇인가. 채무자 대상 금융복지상담제도의 바람직한 모습은 무엇인가.

미국²⁾, 영국³⁾, 일본⁴⁾ 등의 해외 사례에서 보면, 정부와 민간기구의 서민금융정책에 있어서 거버넌스가 중요하며, 이때 민간기구는 비영리 민간단체가 다양한 펀딩을 통해 채무자를 지원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현재 금융복지상담센터와 서민금융진흥원, 두 곳으로 채무자 대상 상담 서비스가 이원화되고, 그 기능과 역할이 다소 중복되고 있는 것이 문제인데,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설립목적, 서비스 내용, 운영 주체 등에 따라 각 기관의 위상과 역할이 구분될 필요가

필요하고, 그들의 필요에 공감하며, 이에 반드시 응답해야 하며, 그 과정은 책임감 있게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Held, Virginia. 2006. 「돌봄:돌봄윤리」. 김희강 나상원 역. 박영사)

- 2) 미국 비영리 민간단체 NFCC(The National Foundation for Credit Counseling)의 CCCS(Consumer Credit Counselling Service), AICCA(The Association of Independent Consumer Credit Counselling Agencies), CCCA(Consumer Counseling Centers of America) 등은 각종 자료제공 및 상담은 물론 채무자를 대신해 채권자와 접촉하고 상황조건 협상과 상환을 대행하는 적극적인 채무관리 프로그램(Debt Management Program)을 운용하며, 채무자와 채권자의 합의에 기초해 실행된다. 또 채무조정안 작성, 기초적인 재무상담, 파산신청절차(법률적 조언은 금지), 주택 금융, 신용관리교육 및 기타 사회복지제도와 관련된 종합상담을 제공하며, 채권자와의 중재 역할 뿐 아니라 직접 채권회수도 대행한다. 또한 비영리 민간단체 ACCION USA는 대출재원 마련을 위해 사회단체 등 서민복지에 관심을 갖는 다양한 단체로부터 기부금을 받고 있으며 Citigroup, Deutsche Bank, JP Morgan Chase 등 대형금융기관 및 기업으로부터도 기부금을 받는다. ACCION USA는 대출시 과거 신용정보 또는 담보만을 고려하지 않으며 대출자의 품성(character)을 중요시한다. 즉 대출신청자의 성공하려는 의지, 자신의 사업 및 시장에 대한 지식, 고객 및 지인 등의 평가를 고려하여 대출여부를 결정한다.
- 3) 영국의 Citizens Advice는 무료로 부채문제, 복지, 주거, 이민과 보호시설, 소비자불만, 임대차분쟁 등과 관련한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2014년 이후 특히 복지와 부채문제 상담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면서 이와 관련된 활용이 늘고 있다. Citizen Advice는 소득수준이 낮은 과중 채무자들을 대상으로 채무변제계획 수립, 신용교육 실시, 저신용자를 대상으로 적절한 금융연계서비스 제공하며, 전체 예산의 80% 가량을 영국 중앙정부 및 지방정부의 재정재원과 기부금으로 충당하며, 채무와 지배구조에 대해 Charity Commission의 관리 감독을 받는다. 시민상담소를 통해 채무자의 신용, 재정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상담이 활성화되어 있으며, 개인 신용회복의 지원창구를 국가적 차원에서 강화함으로써 채무자-채권자간 중재비용을 사회전체가 부담하고 있다.
- 4) 일본은 소비자신용 증가와 장기 경기침체, 고리사채로 90년대 중반부터 다중채무자가 급증하면서 소비자의 개인파산에 관한 법률적 절차와 정비의 필요성이 제기됐고 채권자와 채무자 간의 임의정리를 지원하기 위한 민간기구 JCCA(Japan Credit Counseling Association)가 설립됐다. JCCA는 채무자에 대해 채권자와의 직접적인 해결을 중개하거나 법률적인 조정 및 파산절차에 대해 조언을 해주는 민간기구로 소비자보호 입장에서 중립적인 상담으로 채무자들의 생활을 재건, 구제하고, 소비자 신용의 건전한 이용을 계몽해 다중채무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지원하는 게 목적이다. JCCA는 지자체 산하의 소비생활센터 등에서 사회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광범위한 재무상담 서비스 제공하는 민간자율상담기구로서 재단법인 형태를 띤다.

있다.

이는 사회적으로 배제될 수 있는 소외 계층을 최소화하고, 사회 안전망 내에서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복지의 포괄성 확대”라는 차원에서, 그리고 복지 서비스가 우선 시해야 하는 가치(민감성, 공감, 응답성, 책임성)를 실현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 일 것이다

금융복지 상담센터 한계와 발전 방안

: 법, 제도, 재정 조달 및 운영방식, 전달체계 중심

김미선 성남금융복지상담센터장

○ 한계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의 업무 내용 범위가 조례상 거의 일치
- 상담사는 물론 외부 기관 및 행정 체계 등에서 혼란 초래
- 법과 제도를 통한 교통정리 시급
- 그러나, 실제 설립 취지와 철학과 비전에서는 확연한 차이 드러남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는 정책자금이나 대출상품 취급.
- 채권에 대한 상각 및 회수율을 위한 금융권 즉 채권자 입장을 견지할 수밖에 없는 한계.
- 반면 금융복지 상담센터는 오직 “상담”만 진행함.
- 궁극적인 설립 취지 및 비전은 상환 능력이 없거나 상환이 거의 불가능한 채무자의 빚을 완전히 없애주는데 있음. 즉 채무자의 입장임
- 이러한 철학의 차이는 상담의 양적 성과보다는 질적 성과에서 확인 가능.

- 다만, 현재 금융복지 상담센터의 조정이나 탕감에 있어서의 한계가 뚜렷하여 대부분의 터에서는 사실상 법원에 “파산”서류를 정리하여 공단을 통해 접수하는 역할에 그치고 있음.
- 자칫 법률 사무소의 역할로 축소되고 있으며, 단순히 소송구조 대상이 채무자의 “관재인 선임비”를 지원하는 정도이며, 자칫 공단의 업무 보조 역할로 축소됨.

- 금융복지 상담센터 업무 범위에 있는 외부 협력 기관과의 업무 공조나 협력에도 분명한 한계 있음. 기관 간의 워선 (리드그룹)에서는 조율이 되어도 실무단에서의 온도차이가 분명함. 특히 센터의 정체성에 대한 주변 기관의 의구심에 따라 공단은 물론 법원 등과의 관계에서도 상당한 어려움 있음. (다만, 향후 센터의 권한이 높아질 경우 현재와 같은 인사 채용이나 시스템만으로는 한계가 있음. 필요하다면 센터 내 TFT 등을 구성하여 금융복지 상담사의 업무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도 존재함)

- 현재 금융복지 상담센터 관련 상위법 없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 입지가 매우 좁으며 지속성과 운영의 안정성 등이 담보되어 있지 않음
- 단체장 선거 및 입법 기구의 예·결 심의에 따라 혹은 수탁 기관의 운영 성과 등에 따라 지속성 담보가 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센터는 물론 소속 상담사들의 직무 집중도에 악영향을 줌

- 현재 8개 서울시 외 광역 및 기초 자치 단체에 설립되어 있으나 금융복지 상담센터 전체를 일관되게 운영하며, 각 센터별 현안 문제 및 인사 관리 등에 대하여 조율할 수 있는 중앙기구의 부재로 센터 내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은 채로 적체됨
 - 인사 관리 부재 : 단순히 각 지자체 조례에 의거하여 상담사 채용 및 관리
 - 교육 부재 : 금융복지 상담철학에 대한 교육은 초기 금복사 과정 수료하고 자격증 취득한 상담사에 한함. 그러나 이마저도 만족스럽지 못 함.
무엇보다 지속적인 **직업윤리와 센터 철학과 비전에 대한 교육 부재** 문제 매우 심각
더불어 상담 업무 특성상 “감정 노동”임에도 이에 대한 대응이 미흡
 - 기타 상담사 직무 환경 및 지위 개선을 위한 노력이 응집하지 못 하는 한계
 - : 센터를 찾아오는 내담자의 범죄 이력이라든가 병력에 따른 컨디션으로 간혹 상담사들이 신변에 위협 등을 느끼는 경우 보호를 받을 수 있는 부분에 한계
 - 행정 및 입법 기구 등과의 조율되지 않은 업무에 대한 몰이해가 센터와 상담사에 부정적인 영향
 -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 올 해 “주빌리 은행” 및 “에듀머니”와 각 센터의 대표 성격의 센터장을 중심으로 모임을 진행하였으나 특별한 결과 없이 모임도 지속되지 못 함.
- 발전
- 상담 직무 권한 확대 필요함. 현재는 단순히 상담을 통해 도움 받을 수 있는 채무 조정 제도 안내와 복지 서비스 연계로 국한됨.
 - 상담을 통한 차주의 주도적인 채무 내용 조정 권한 등이 부여되어야 함
 - 특히, 취약 차주 외 차상위, 차차상위 가구가 보유한 채무 문제에 있어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한 즉 연체가 되어야만 채무 조정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전에 연체하지 않고 현금 흐름 조정 및 자체 금융자산 조정 등을 통한 채무 조정이 이뤄지도록 주변 협력 기관과의 협업이 필요함.
 - 예를 들면, 이자율 조정이나 채무 일정 기간 유예 혹은 현재 바뀐드림론이 가지고 있는 장점을 포함한 채무 조정 권한 포함
 - 사후 문제 해결 외 사전 예방적 차원의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능 강화

다만, 10·24 가계부채 종합대책 내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이 언급되어 있어 기대

4.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금융복지 상담센터 공존과 협력 방안

-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와 금융복지 상담센터 각각의 업무 역할을 분리 및 정립 필요
- 예를 들면, 서민금융은 정책 자금 취급 또는 채권 중 고정이하를 제외한 정상 상환 채권 차주 대상 상담을 통한 “재무 건전성” 제고

- 금융복지 상담센터는 고정이하 부실 채권자 중 상환 불능 차주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채무 탕감 상담 및 생활 안정을 위한 다양한 복지 서비스 제공
- 그 외 취약 차주 대상 상담을 통해 적극적인 채무 조정 상담 진행
- 예를 들면, 채권사와의 직접 협상을 통한 채무 변제 금액 조정 등
- 그 외 경계성 가정 예를 들면 하우스 푸어 등의 차차상위 차주의 주도적인 채무 상환 가능한 재무 구조를 위한 상담 서비스 제공 등
- 단, 이 경우 법원 외 기타 금융기관 등과의 협약 이상의 강제력 갖는 제도나 법안 마련 필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최건호 서민금융진흥원 부원장

□ (개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이하 “통합지원센터”)를 통해 다수 기관*에 산재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반 서민금융 지원제도를 한 자리에서 체계적으로 지원

* 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캠프 등

○ 수요자가 한 자리에서 저리 자금지원, 신용회복 지원 등 상담·접수·지원·사후관리 기능까지 수행하는 원스톱 서비스 제공

□ (구축현황) 서민금융 유관기관, 지방자치단체, 관계부처(고용복지+센터) 등과의 협업을 통해 최대한 신속하게 설치

○ 지역별로 서민금융 이용자 접근성을 고려한 36개 생활권*에 우선 설치 후 특별재난지역** 등 지원이 시급한 지역에 추가 설치

⇒ ‘17년말까지 총 42여개 구축 예정

*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권역으로 전 지역을 1~1.5시간 이내 도달할 수 있는 생활권역

** 자연재해 등의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해 특별 조치가 필요한 지역

〈참고〉 ‘17년 통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시기 권역		‘17년 설치 현황						
		2월	4월	5월	9월	10월	11월	12월
서울경기	3	강남 ¹⁾			계양 ²⁾			하남 ²⁾
부산경상	4			거제 ²⁾	경주 ²⁾	안동 ²⁾		진주 ²⁾
충청강원	1						속초 ²⁾	
전라제주	1		익산					
계	9	1	1	1	2	1	1	2

1) 한국자산관리공사 서울지역 본부 內 설치

2) 고용복지+센터 內 설치(총 7개소, 설치비 및 운영비 절감)

□ (주요업무) 통합지원센터에 참여하는 각 서민금융기관이 한 공간에서 제반 서민금융 지원제도 및 채무조정 서비스 등을 원스톱 지원

○ 이용자가 통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최적의 서민금융 지원제도에 대한 상담접수 및 지원이

가능하도록 업무 수행

- 자금대출, 채무조정, 고금리 전환 등 서민금융기관의 **고유 업무**를 각기 수행하고, 필요 시 **상호기관 간 업무 연계***

* 인근지역 지자체 및 고용·복지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지원

〈 참고 : 통합지원센터 상담프로세스 〉

- ① (초기안내) 안내창구를 통해 방문 목적에 맞는 창구로 배분
- ② (기관별 상담창구) 각 기관 창구에서는 해당 기관의 서비스를 우선 제공하며, 상담·심사·지원 결정(대출·채무조정 등)의 전 과정을 이행
- ③ (종합서비스) 종합적인 상담 필요 시 방문자가 희망하는 서비스 외에 수혜 가능한 다른 서비스 내용을 안내하고 연계

- (운영재원) 사무실 제공기관*과 참여기관이 분담하여 비용 부담

* 참여기관 중, 통합지원센터 사무공간을 제공하는 특정 기관(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 (향후계획) '18년에는 **통합지원센터 확대 운영 및 종합상담 기능 강화** 예정

- 통합지원센터의 전국망 확보에도 불구하고, **거리상담채널 부족** 등의 이유로 서민금융 이용에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에 설치

참고1

통합지원센터 참여기관별 수행 업무

기관명	수행업무	비 고
<p>서민금융진흥원 (미소금융재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저소득·저신용자에 대한 창업·운영자금 상담 및 지원 • 임대보증금 대출 상담 및 지원 • 청년·대학생 햇살론 대출 상담 및 지원 • 맞춤대출 서비스 제공 • 미소드림 및 청소년한부모 적금 상담 • 자영업자 창업교육 및 취업상담 등 	
<p>신용회복위원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프리워크아웃 상담 및 지원 • 공적채무조정(개인회생, 파산) 연계 상담 및 지원 • 신용관리 교육 • 소액대출 및 청년·대학생 햇살론 지원 • 소액신용카드 발급 지원 • 대학생실패한 중소기업안군복무자 등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 등 	
<p>한국자산관리공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바꿔드림론 상담 및 지원 • 소액대출 상담 및 지원 • 국민행복기금 학자금 채무조정 등 	
<p>현장대출 지원 (저축은행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 햇살론 및 사업자 햇살론 상담 및 지원 등 	<p>필요시</p>

참고2

통합지원센터 설치 현황

순번	지역	센터명	주소
1	서울 (6)	강남	서울 강남구 강남대로 450 (역삼동) 한국자산관리공사 1층
2		양천	서울 양천구 목동로 177 정동빌딩 7층
3		광진	서울 광진구 광나루로 56길 85 테크노마트 5층
4		관악	서울 관악구 시흥대로 578 광안빌딩 6층
5		노원	서울 노원구 노해로 455 인산빌딩 3층
6		중양	서울 중구 세종대로 124 프레스빌딩 6층
7	경기· 인천(9)	부천	경기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66 용운빌딩 8층
8		수원	경기 수원시 팔달구 매산로 37 코스모수원빌딩 8층
9		성남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146 성남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층
10		고양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187 흥국생명빌딩 5층
11		안양	경기 안양시 안양로 270 남서울빌딩 7층
12		안산	경기 안산시 단원구 중앙대로 927 남양빌딩 5층
13		의정부	경기 의정부시 평화로 516 한화생명빌딩 4층
14		계양	인천 계양구 장제로 804 영산빌딩 인천북부고용복지+센터 2층
15		인천	인천 남동구 문화로 131 인천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
16	경상 (10)	부산	부산 연제구 중앙대로 1000 국민연금공단 16층
17		사상	부산 사상구 사상로 200 엠시티빌딩 7층
18		대구	대구 중구 경상감영길 155 sc제일은행 4층
19		울산	경남 울산시 남구 화합로 106 울산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20		창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마디미서로 60 창원 고용복지플러스센터 1층
21		포항	경북 포항시 중흥로 221 고용복지플러스센터
22		구미	경북 구미시 송정대로 73 KB손해보험빌딩 2층
23		거제	경남 거제시 서문로5길 6 우형빌딩 3층
24		경주	경북 경주시 동천동 755-8 경주고용복지+센터 3층
25		안동	경북 안동시 태화동 715-3 안동고용복지+센터 2층
26	전라 (5)	광주	광주 동구 금남로 182 우리종합금융 6층
27		목포	전남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전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5층
28		순천	전남 순천시 중앙로 39 동양생명빌딩 6층
29		전주	전북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 114 고용복지플러스센터
30		익산	전북 익산시 익산대로 16길 39, SK빌딩 11층
31	충청 (5)	대전	대전 중구 중앙로 101 충남도청사 3층
32		천안	충남 천안시 동남구 충절로 17 삼성생명빌딩 9층
33		홍성	충남 홍성군 홍성읍 오관리 261 충남빌딩 6층 301호
34		청주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81번길 4 미래에셋대우증권빌딩 4층
35		충주	충북 충주시 탄금대로 39 세일빌딩 2층
36	강원 (3)	춘천	강원 춘천시 금강로 45 기업은행 춘천지점 2층
37		강릉	강원 강릉시 강릉대로 33 강릉시청 15층
38		원주	강원 원주시 시청로 36 (무실동) 씨티타워 2층
39	제주(1)	제주	제주 제주시 중앙로 165 제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3층